

최종 보고서

지역 지식재산 사업 운영체계 및 재편방안 연구

2022. 5. 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목 차

I. 연구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II. 「지역 지식재산진흥법」 제정에 따른 지자체의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체계 4

1. 해외 주요국에서의 지자체의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체계
2. 국내 타 분야 지자체 주도 지역 사업 운영체계 사례 분석
3. 소결

III. 현행 중앙정부의 지역 지식재산 사업 재편 방안 40

1. 지역 지식재산센터(RIPC) 사업 개요
2. 지자체의 고유사업
3. 중앙정부의 위임사업
4. 중앙정부의 지역 지식재산 사업 재편방안 제안

IV. 「지역 지식재산진흥법」 시행령 및 지방 지식재산 조례 제·개정안 48

1. 「지역 지식재산진흥법」의 주요내용
2. 「지역 지식재산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3. 지방 지식재산 조례 개정(안)

- 붙임 1. 중국 지역 지식재산권보호센터(56개)
2.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안) 2022. 2. 28. 버전
 3.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 시행령(안)
 4.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표준 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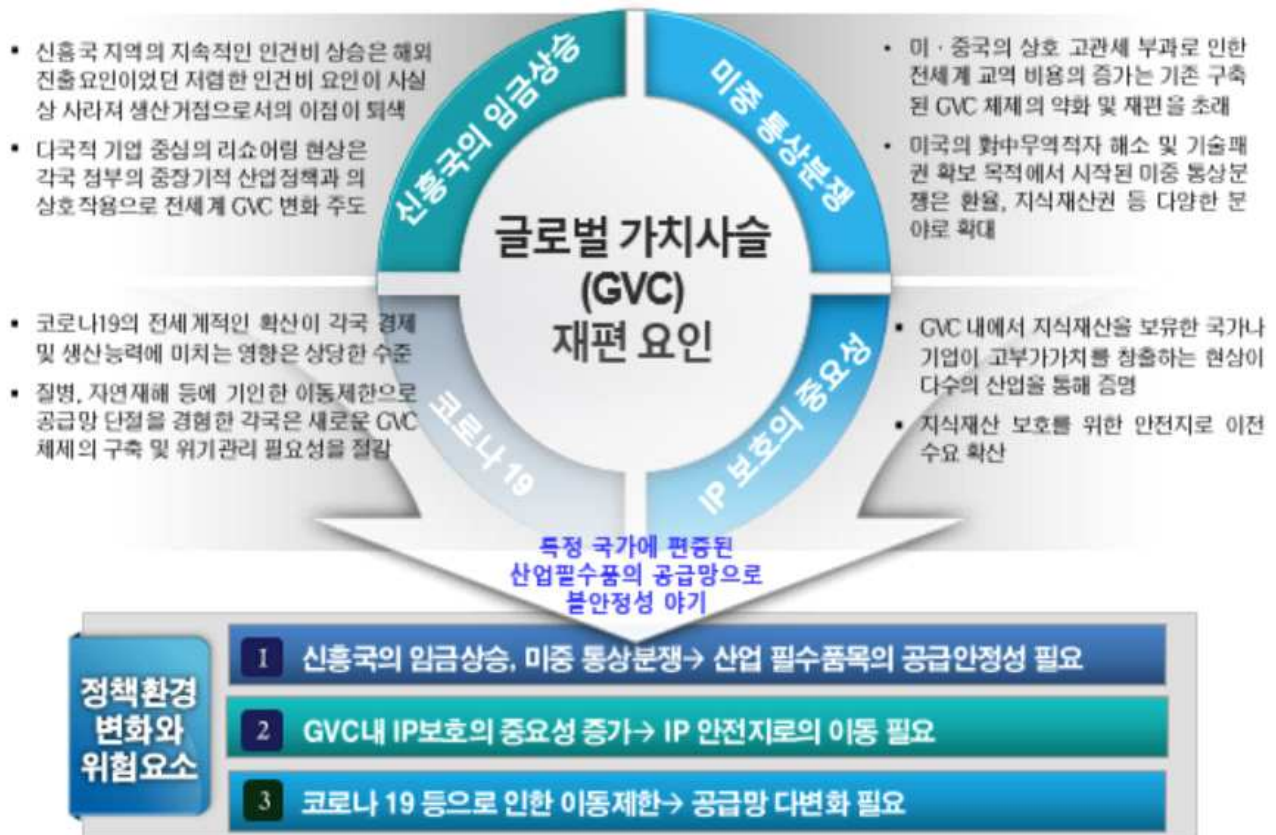
I . 연구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지식재산진흥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간 지식재산 환경의 불균형 존재
 - 지역 간 지식재산 편차를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지식재산 기본법」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최고 규범이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적으로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제4조 제2항)로서 선언적 규정
 - 지방조례의 제·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의 영역이나, 전체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원활화와 그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통일적인 법령 및 정책지침의 제시가 필요
 -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에 따라 「지역 지식재산진흥법」의 제정을 추진
 - 「지역 지식재산진흥법」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해 필요하다면 하위법령, 지역 지식재산 조례 표준안 제정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GVC 변화에 따라 공급망 다각화, 기업의 본국 회귀 및 GVC의 지역화가 예상됨
 -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화의 축소 경향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리스크 경감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재편
 - 코로나19 충격과 함께 미·중 무역 분쟁도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망의 지역적 다각화 및 본국 회귀를 확대할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음
 - 생산 관리 유연성을 높이고 교역 중단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생산 대신 국내 및 역내 공급처를 확대할 가능성
 - 국내 회귀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지로 이전 수요 확산

- 따라서 기업의 본국 회귀시 지역이 지식재산 보호 안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정책적 뒷받침 필요

[그림 1]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요인에 이에 따른 정책환경변화



※ 출처 : 연구진 작성

-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 지식재산 사업 운영체계 개편시 정책반영
 - 지자체 주도의 지역 지식재산 사업 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지식재산 역량 향상 및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한 피해 방지
- 「지역 지식재산진흥법」 제정에 따른 현행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 지식재산 사업의 재편의 검토
 - 「지역 지식재산진흥법」의 내용분석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분석, 지역 지식재산 사업체계의 변화 등을 검토
 - 「지역 지식재산진흥법」의 제정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진흥법 시행령(안)」 제시
 - 「지역 지식재산진흥법」과 정합성을 가지는 표준 「지방 지식재산 조례 개정(안)」 제시

II. 「지역 지식재산진흥법」 제정에 따른 지자체의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체계

1 해외 주요국에서의 지자체의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체계

가. 일본

1)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地域知財活性化行動計画)

□ 배경 및 추진체계

- (배경)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창출을 지원하고 일본의 경제 성장력 향상과 지방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을 수립
-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의 추진 체제) 본 계획의 최종적 목표를 공유하고 각각 달성해야 하는 일본 특허청(JPO)의 목표,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의 중기계획, 각 지자체의 산업진흥비전 등을 바탕으로 추진
 - ※ 최종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특허청 및 INPIT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책」과 「지자체의 산업진흥 비전 등에 기재된 지역의 지식재산 특성에 따른 시책」, 「각 경제산업국의 시책」을 융합시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
- (특허청)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사업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 동시에 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법에 대해 분석·검증을 실시하고, 새로운 시책의 검토나 기존의 지식재산 지원 사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응을 추진
- (지적재산실)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뿐 아니라 농림수산성 등과도 제휴를 도모하면서 영업비밀이나 농업 분야(육성자권,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횡단적인 지원의 실행을 담당하고, 지역에서 지자체, 경제산업국의 타부국 및 다른 지원기관의 협력을 얻어 지역·중소기업의 ‘능력(稼ぐ力)’을 강화
- (INPIT) 지식재산의 창조·보호·활용까지의 지원을 일관적으로 수행하는 기간적 지원기관으로서 산업재산권 상담창구를 비롯해 영업비밀·지식재산 전략상담창구, 해외전개 지적재산 지원창구,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를 설치하고, 다른 지원

기관이나 지자체와도 연계하여 내실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

- (지자체) 산업진흥비전 등에 기재된 계획에 기초한 타깃에 따른 자주적인 시책을 지적재산실이나 창구와 연계하여 대응

□ 제1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

- 2019년까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종합지원 창구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역 차원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¹⁾

핵심성과지표(KPI)	주요 내용
전국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의 상담건수	2015년 80,000건을 기록하였고 2019년 95,000건을 목표로 설정
전국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를 통한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지원건수	2015년 12,500건을 기록하였고 2019년 15,000건을 목표로 설정
전국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를 통한 ‘요로즈지원거점 ²⁾ 과의 연계건수	2015년 700건을 기록하였고 2019년 1,500건을 목표로 설정

- *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란 조직의 목표 달성의 정도를 계량하는 지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를 의미하며, 그 선정기준은 ‘목표달성에 중요한 것’이어야 하며 그 수가 많지 않은 ‘소수일 것’을 요함. 주로 리더십 육성, 고용, 서비스,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정량적 계측이 어려운 것을 정량화하는데 사용됨.

[표 1] 제1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의 실시 내용 및 성과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NEWS 2017-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INPIT&po_item_gb=JP¤tPage=5&po_no=16320
 2) ‘요로즈지원거점(よろず支援拠点)’은 중소기업의 경영전반을 상담·지원하는 창구로서, 요로즈(よろず)는 한국의 원스톱시스템에 해당함.

	실시내용	성과
중앙차원	일본 특허청(JPO)이 관할하는 산업재산권 이외에 농림수산업 등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영업비밀과 농업분야(육성자권, 지리적표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	각 경제산업국에 설치했던 ‘특허실’을 ‘지적재산실’로 개편하였고 ³⁾ 중소기업의 특허료 등 지원을 실시 ☞ 중소기업에 의한 산업재산권의 신규 출원 수는 14,038건으로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의 비율도 16.1%로 상승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에서도 2016년도에 특허청으로부터 이관된 창구를 47개 도도부현(都道府)에 설치하고 해외전개나 영업비밀 등의 전문창구에 의한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지적재산의 취득·이용·활용에 이르기까지 지원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상담·지원체제 구축을 도모	지원거점 등의 다른 지원기관과 창구가 연계하여 지원한 결과, 지식재산 전략 책정에서 상품개발, 판매까지 단번에 걸쳐 지원함으로써 이익(수익) 증가나 해외전개 등의 새로운 시장 진출로 이어진 사례 창출
지역수준	각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특색을 바탕으로 산업정책과의 연계, 중점산업분야(예: 농림수산업, 로봇, 의료복지 등), 해외전개, 산학관·금융 연계, 재해복구, 지역단체 상표·GI, 각종 이벤트 실시(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심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도부현별, 현별로 설정 성과 목표(KPI)를 실시	☞ 전국적으로 90% 이상의 KPI를 달성 또한, 지자체의 관계자 사이에 지식재산의 의식이 전환되고, 지자체의 새로운 경제 전략에 지식재산의 활용에 대해 언급된 사례, 신상품의 특징적인 네이밍을 상표로서 보호하고 특허 기술을 이용해 상품의 부가가치화를 도모한 결과, 매출이 증가한 사례 등 많은 성과가 창출되어 지역 관계자 사이에 그들 성공 사례가 공유

□ 제2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JPO와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차기 행동계획을 수립(2020년 7월 15일)

3) 관련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NEWS 제2017-1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tPage=94&po_no=16595

기본방침	내용
기본방침 1 : 목표를 겨냥한 지역·중소기업 지원의 내실화	• 관계 주체마다 목표를 겨냥하고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이용·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도 수준을 높여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 • JPO 및 INPIT는 지역 미래 견인 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용에 대한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목표로 시작부터 사업성장까지 후속조치를 지원
기본방침 2 : 지역·중소기업 지원 플레이어의 연계와 지원의 융합	• JPO 외 관계 부처, 다른 관련 주체나 지역의 지원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 지원 사업과 JPO의 지식재산 정책을 융합하여 수평적·일체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기본방침 3 : 핵심성과지표의 설정·공유와 새로운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한 대응	• 각 관계 주체가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PDCA 사이클을 돌리면서 정기적으로 자기검증을 실시해 다른 관련 주체에게 공유함으로써 관계 주체 간의 활동 상황을 서로 파악

※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https://www.meti.go.jp/press/2020/07/20200715003/20200715003.html>)

2)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담당 기관

□ 일본 특허청

○ 순회특허청

- 지식재산을 활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 등의 의식을 계발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기업의 저변을 확대, 출원인 등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5년도부터 실시
- 포럼이나 세미나를 축으로, 출장면접심사, 임시상담창구의 개설, 화상면접심사 시범, 모의심판정에서의 구두심리실연 등을 주요한 메뉴로 해서 개최지역에 따라 조정

○ 중소기업 지적재산지원사업

- 각 지역 경제 산업국(홋카이도, 도호쿠, 광역관동권, 중부, 긴키, 중국,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 지적재산실 및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의 지적재산실에서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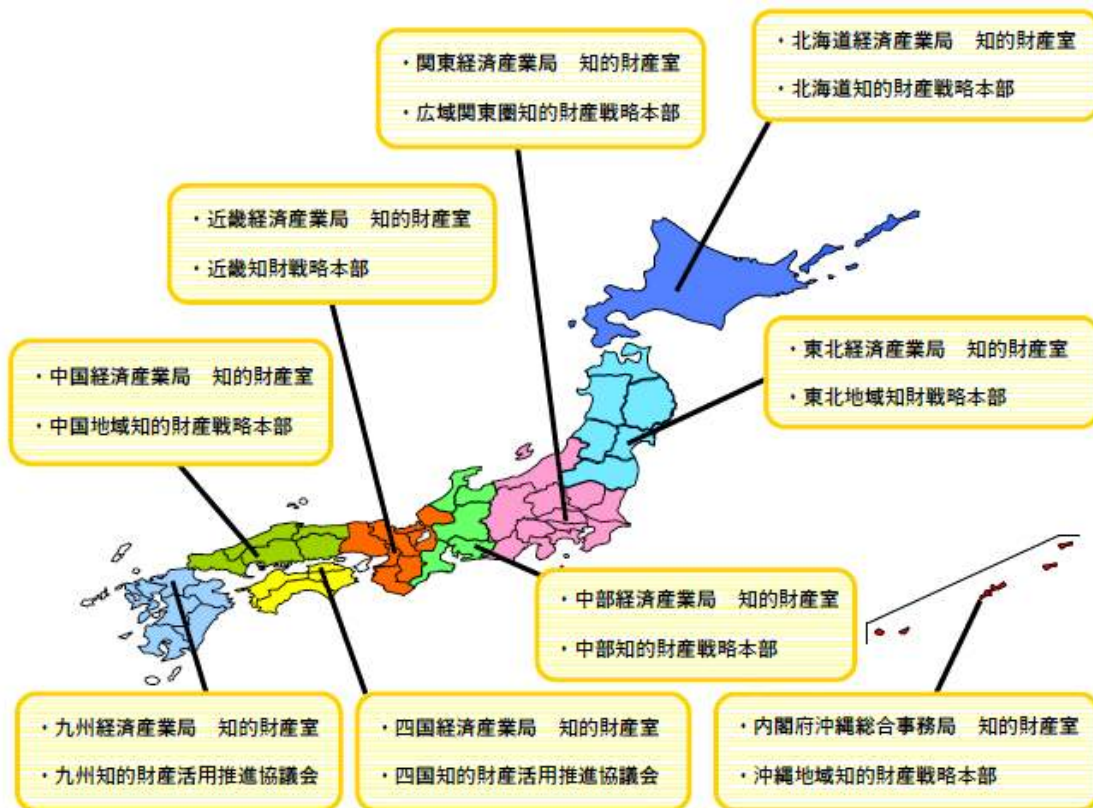
□ 경제산업국 지적재산실/지역지재전략본부

○ 경제산업국 지적재산실

- 지식재산권 제도의 보급 계발, 산업재산권 취득 및 지역 요구에 따른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에 관한 지원사업 실시, 각종 지원 시책의 소개
- 지식재산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은 각 도도부현 지재종합지원창구에서 실시

○ 지역 지적재산전략본부

- 각 경제산업국 지적재산실이 사무국이 되어 2005년도 전국 각지의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9개의 지역지적재산전략본부(홋카이도, 도호쿠, 광역관동권, 중부, 긴키, 중국,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가 설치함
 - ※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책정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04」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권리취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산업국 등에 지역지적재산전략본부를 정비」하도록 함
- 각 지역 지적재산전략본부(지적재산실)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 전략’, ‘기술·디자인’, ‘지역브랜드’, ‘해외 전개’, ‘권리 침해’, ‘인재육성’ 등의 지원을 담당
 - ※ 다만, 지역 지적재산전략본부마다 시행계획, 지원 수준, 지원 업무, 업데이트 상황 등이 상이하며, 일부 지적재산전략본부는 해소(解消)되어 ‘(해당지역) 지적재산활용추진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바뀜(큐슈 지적재산활용추진협의회, 시코쿠 지적재산활용추진협의회). 지역 지적재산전략본부와 지역 지적재산활용추진협의회 조직의 경우, 직함만 다를 뿐 실질적인 구성원의 차이는 없음(본부장-의장, 부분부장-부의장, 본부원-의원으로 구성)



※ 출처 :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jpo.go.jp/introduction/soshiki/chizaishitsu/index.html>)

[예시] 홋카이도 지적재산전략본부

- 홋카이도 지적재산전략본부는 홋카이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여 도내 지식재산 시책을 실시(2005년 7월 설립)
- 홋카이도에서는 도내 22의 지적재산관계기관 등이 공통인식 하에 일체가 된 체제를 구축하여 홋카이도에서의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적정하고 원활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조직은 본부장은 홋카이도 지사, 부분부장은 경제산업성 홋카이도 경제산업국장, 홋카이도 경제연합회회장으로 하고, 그 아래 26명의 홋카이도 지역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됨
 - * 재무성 하코다테 세관 세관장, 농림 수산성 홋카이도 농정 사무소 소장, 홋카이도 경찰 본부 본부장, 홋카이도 시장회 회장, 홋카이도 상공회 연합회 회장, 도카이대 학교수, 일반 사단법인 홋카이도 발명 협회 회장, 일본 변리사회 홋카이도회 회장, 일반 사단법인 삿포로 은행 협회 회장,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 기구 홋카이도 본부 본부장, 공익재단법인 홋카이도 과학기술 종합진흥센터 이사장, 일반 사단법인 홋카이도 신용금고협회 회장, 일반 사단법인 홋카이도 영상 관련 사업사 협회 회장 등 26명(2021년 8월 현재)

그림 홋카이도 지적재산전략본부 조직도

사무국

홋카이도 경제산업국(지적재산실), 홋카이도(과학기술진흥실)

본부회

【역할】 본부의 대책 방침, 간사회 및 전문 위원회에서의 검토 내용의 심의
【본부원】 각 구성기관의 대표자
본부장: 홋카이도지사
부분부장: 홋카이도경제산업국장 및 홋카이도경제연합회 회장

간사회

【역할】 본부의 구체적인 대처에 관한 검토 및 연락 조정 등
【간사】 본부원 또는 본부원이 지명하는 사람

전문위원회

【역할】 본부회가 정한 사항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전문적인 관점에서 검토
【간사】 설치할 때마다 테마에 따라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 출처 : 일본 홋카이도 지적재산전략본부 홈페이지(<https://www.hkd.meti.go.jp/hokip/chizai/about/index.htm>)

- 홋카이도 경제산업국(www.hkd.meti.go.jp)의 지적재산실*에서는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제도의 소개·활용 지원을 비롯해 지역 단체상표에 의한 브랜드 보호나 기업의 해외 전개를 위한 국제 출원을 지원하여 지적재산 활동의 촉진에 향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식 재산에 관한 상담에 원 스톱으로 대응

* 홋카이도 경제산업국>지역경제부>산업기술혁신과 아래 지적재산실(실장 : 坂野 眞 (SAKANO MAKOTO), 담당자 이메일 : hokkaido-chizai@meti.go.jp)이 있음

[예시] 시코쿠 지적재산활용추진협회의

○ 연혁

- 시코쿠 경제산업국에서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04’에 근거하여 2005년 5월 ‘시코쿠 지역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함
- 지식자산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2018년 5월 시코쿠 지역 지적재산전략본부를 해소하고 실무자에 의한 지식재산 보급 계발, 활용 추진 논의를 실시하기 위해 ‘시코쿠 지적재산활용추진협의회’를 설치함

○ 활동

- (기본방침) 지역 내 혁신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활용 강화, 지식재산의 저변 확대를 위한 보급·계발, 안정적·계속적 지식재산 활용 환경정비, 지식재산 인재육성의 추진
- (시코쿠 지적재산활용추진협회 활동) 기업 등 지식재산 보급 계발 및 활용 추진을 위한 논의와 인식공유, 시책 제안, 협의회 참가 회원 협력을 통한 대응 검토, 지원 시책 및 회원 간 대응에 관한 정보 공유 등

○ 목적

- 시코쿠 지역 민간기업 등의 지식재산 전략 활용 및 지식재산제도의 보급을 추진하고자 시코쿠 경제산업국에 시코쿠 지적재산활용추진협의회를 설치

○ 조직

-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조직
- 의장은 위원의 호선(선거)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은 시코쿠 경제산업국 지역경제부장을 겸임
- 위원은 지식재산 활용 등의 전문가로 시코쿠 경제산업국장이 위촉(임기: 위촉일로부터 익익년 3월 31일)

○ 기타사항

- 협의회에 관한 사무는 시코쿠 경제산업국 지역경제부산업기술과 지적재산실에서 처리

* 관련 링크 ‘시코쿠 지적재산활용추진협의회 설치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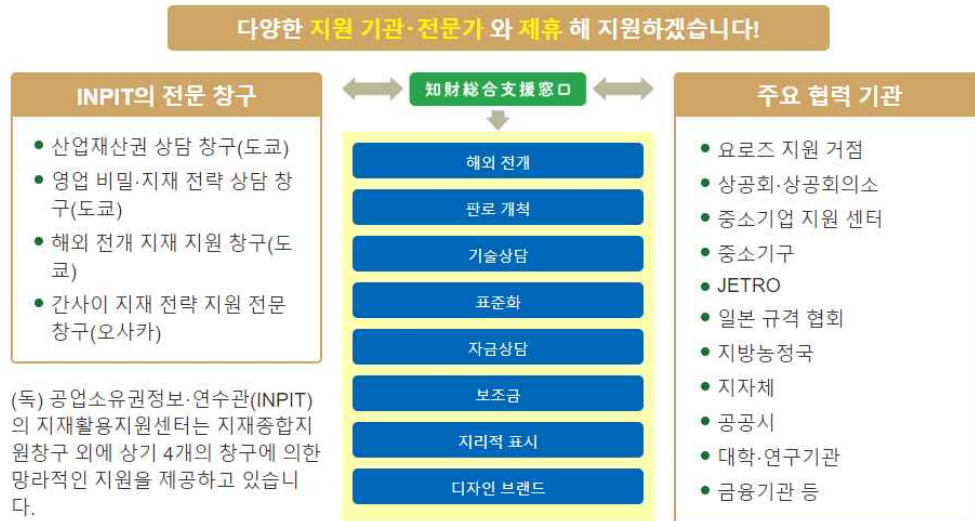
:<https://www.shikoku.meti.go.jp/chizai/pdf/suisin.pdf>

□ INPIT의 지재종합지원창구(知財総合支援窓口)⁴⁾

○ 개요

- 2011년 4월, 다양한 전문가·지원기관 등과의 공동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용·신규 사업화를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
- 지원창구는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되어 있고, 중소기업 등이 기업경영 중에 안고 있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전개, 해외전개까지의 폭넓은 지식재산의 다양한 문제 및 상담을 원스톱으로 접수
-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지재종합지원창구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실시하고 다양한 지원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원을 실시

4)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 참조: <https://chizai-portal.inpit.go.jp/about/>



○ 지원 내용

- 지원창구에는 기업 OB 등의 창구지원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고, 상담 내용의 청취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 및 지식재산 문제를 파악하여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
- 상담은 각지 창구에서의 대면상담 또는 전화·메일 상담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창구지원담당자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
-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지원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지원 체제를 갖추는 이외에 다양한 기관과 연대해서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무형재산인 지식재산을 경영 리소스의 하나로서 파악하여 단순한 출원·권리화 지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의 활용지원을 통해서 중견·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표 2] 일본 지재종합창구의 전문가 지원 내용

전문가	담당업무
변리사 (주 1회 이상 창구에 배치)	출원절차 및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지원, 오픈 클로즈 전략에 대한 조언
변호사 (월 1회 이상 창구에 배치)	경고를 받았을 경우나 계약 안건에서의 법적인 어드바이스, 자사 상표의 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어드바이스
브랜드 전문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대해서, 브랜드 육성이나 판매 전략을 컨셉 만들기로부터 지원
해외 지재 전문가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나 해외 전개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조언
중소기업 진단사	판로 개척, 자금 조달, 사업 전개에 대한 조언
디자이너	상품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시장·유저·생산·비용 등의 관점에서 다면적으로 어드바이스
직무발명규정/영업비밀 관리 규정 대응 전문가	직무발명규정이나 영업비밀관리규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규정책정에 대해 조언
농림수산 전문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 산업화에 관한 조언

상담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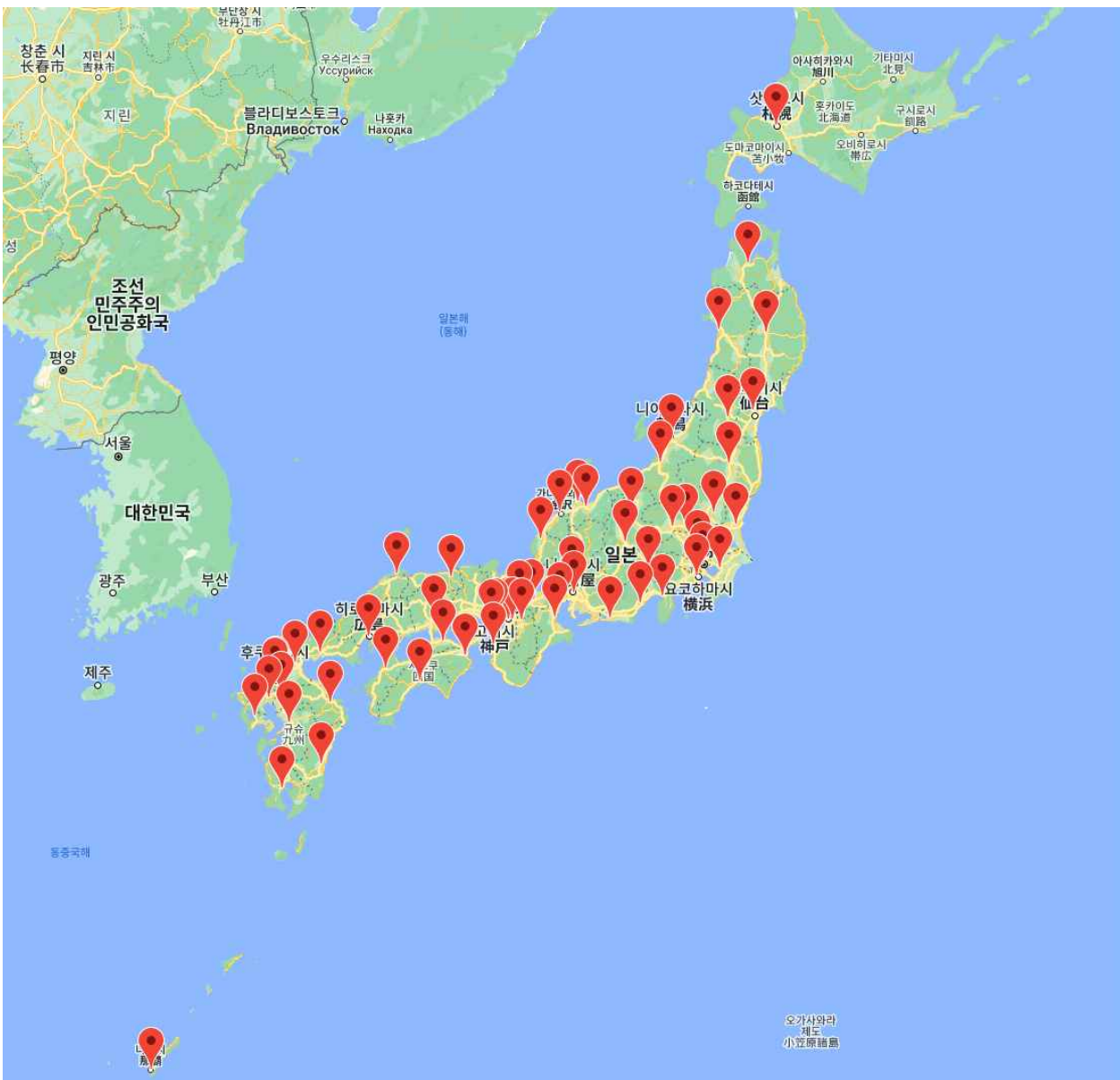


○ 특이사항

- (각 창구 정보) 각 창구별 지원내용, 운영사업자 정보 및 접근 방법을 제공
- (상담·지원 정보)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정보, Q&A, 전문가 상담 스케줄, 지식 재산 기초 세미나 정보 제공
- (지원 사례) 일본 전국의 지원 사례 및 각 지역창구별 지원 사례 정보 확인 가능

※ 현재까지 총 1,044건의 지재종합지원창구를 통한 지원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상표, 브랜드, 영업비밀, 사업·경영 등에 대한 각 현별 지원 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 일본 전국 지재종합지원창구5)



5) <https://chizai-portal.inpit.go.jp/area/>

홋카이도·도호쿠 | 홋카이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간토 |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 니가타 야마나시 나가노 시즈오카

중부 | 도야마 이시카와 기후 아이치 삼중

긴키 | 후쿠이 시가 교토 오사카 효고 나라 와카야마

중국·시코쿠 | 돗토리 시마네 오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도쿠시마 가가와 에히메 고치

규슈·오키나와 |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오키나와



나. 중국

1) 2022년 지방 지식재산업무 접수 창구 업무 요점(2022年 地方知识产权业务受理窗口工作要点)⁶⁾

□ 배경

- CNIPA는 동 요점을 통해 지방 지식재산업무 접수 창구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년)’ 및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원스톱(一站式)’ 서비스를 완비하고 서비스 기능을 다양화하며 서비스 효율성을 높여 업무 통합의 심층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참고]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2021-2035)(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2021 - 2035年))

- 2021년 9월 2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2021-2035)(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2021 - 2035年))’를 발표하고 모든 지역과 부처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 (개요)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강국 건설 추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지식재산권 제도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동 강요를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강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건설
 - 완전한 범주, 치밀한 구조, 내외부의 조화를 갖춘 법률체계를 수립함
 - 통일된 직책, 과학적인 규범, 우수한 서비스를 갖춘 관리체제를 수립함
 -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시스템을 수립함
 - 신속하게 대응하고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신흥분야 및 특정분야의 지식재산권 규칙체계를 수립함
 - (2)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 건설
 -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명확한 권한과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사법보호 체제를 완비함
 -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엄격하고 공평하면서 투명한 행정보호 체제를 완비함
 - 통일된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 빠른 속도와 높은 능력을 갖춘 협력 및 보호 구조를 완비함
 - (3) 창조적 혁신을 장려하는 지식재산권 시장 운영 메커니즘 건설
 - 기업을 주체로 두고 시장 지향적인 고품질의 창조 메커니즘을 구축함
 - 높은 능력과 원활한 운영, 충분한 가치를 실현하는 활용 메커니즘을 구축함

6) 동 요점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2/4/8/art_75_174419.html.

- 표준화되고 질서정연하며 역동적인 시장화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함

(4) 국민의 편익을 위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

- 포괄적이고 규범적이며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화함
- 공공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네트워크화 건설을 강화함
- 데이터 표준, 자원 통합, 높은 이용 효율을 갖춘 정보서비스 모델을 수립함

* 출처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지역&po_item_gb=CN¤tPage=3&po_no=20727

[참고]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계획(“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 2021년 10월 2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계획(“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을 발표함

- (배경) 2017년 1월 13일, 국무원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자 ‘13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계획’을 제정하여 완료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계획은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촉진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에 근거하여 제정됨

(1) 4대 주요목표

-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단계 도약
- 지식재산권 활용의 새로운 성과 창출
-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새로운 수준 도달
-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의 새로운 진전 실현

(2) 5대 중점업무

-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전체 사회의 혁신 활력을 촉진
- 지식재산권 이전 및 전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물 경제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
- 국민의 편익을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 성과를 촉진
-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형 경제 발전에 기여
- 지식재산권 인재와 문화의 건설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

* 출처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보호 및 활용 계획&po_item_gb=CN&po_no=20808

□ 주요내용

○ 창구 서비스 기능 확장

- (창구 업무 범위의 적극적인 확장) 관련 지방 창구는 관련 지방 지식재산부서의 지원 하에, 사회적 수요와 결합하여 더 많은 민·관·기업 편의 조치를 실시하고, 경영관리, 홍보교육, 상담서비스 등에 있어 특허·상표 등의 지식재산 업무를 긴밀하게 융합·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 (활용 촉진 업무의 전면적인 확대) 자격을 갖춘 창구가 지역 특허 전환을 위한 특별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식재산권 저장·융자 및 ‘산업 단지 기업 혜택(入园惠企)’ 활동을 지원하며, 창구 서비스 공간과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
- (문화 홍보 및 법적 대중화 입지 마련) 지역 창구가 시장 주체와 밀접한 이점을 활용하여 ‘전국 지식재산 홍보 주간’ 등의 활동에 의거해 지식재산 문화의 새로운 이념을 널리 알리고 지식재산권이 기업·캠퍼스·지역사회에 진출하도록 추진하여 우호적인 지식재산 문화 및 분위기를 조성

○ 창구 서비스 능력 향상

- (창구 서비스 인식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정부 서비스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창구 서비스의 표준화 건설을 강화하고 대중의 이익과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향상
- (업무 교육 교류 및 인재 양성 강화) 최신 정책 변화와 업무 요구사항에 따라 인사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적시에 업무 및 정책 학습을 구성하고 창구 직원을 위한 업무 학습 및 소통 채널을 확대

○ 창구 관리 체계 개선

- (창구 관리 및 지도 업무 체계 완비) 부서 협력을 강화하여 창구 배치 계획, 건설 관리, 업무 교육 및 지도 감독 등의 단계를 포괄하는 창구 관리 및 지도 업무 체계를 확립
- (상표 업무 접수 창구의 최적화 추진) 국가 지역 발전 전략을 엄격히 통제하고 지방 상표 업무의 실제 수요를 결합하여 상표 업무 접수 창구의 증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창구의 지역 구성을 최적화

2)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담당 기관

□ 지역 지식재산권보호센터

○ 설립 목적

- 2016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 신속 협동 보호 사업을 시작하고, 우세 산업 집결지에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배치하여 심사의 신속한 처리와 과학적 분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신속 심사, 신속 전리권 확인⁷⁾, 신속 권익보호 "원스톱" 분쟁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⁸⁾
- 중점 기술 분야의 특허⁹⁾·실용신안·디자인, 상표, 식물 신품종의 심사 처리, 전리권 확인과 권익보호 지원을 가속화 함
-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발명은 평균 3~6개월 정도, 실용신안은 평균 2개월 정도, 디자인은 평균 1개월 정도로 등록기간이 단축됨
-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설립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일정한 적극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¹⁰⁾.
 - * 현재 전국에는 56개의 지식재산권보호센터가 있으며, 그중 성급 보호센터가 15개¹¹⁾, 시급 보호센터가 41개(이미 비준을 받고 건설 중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포함¹²⁾)가 설치되었다. 전국 56개 센터에서 33개 분야¹³⁾의 산업 지원(2022년 4월 기준)

○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운영조직

- 지역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설립에 관하여, 지역에 상응하는 정부가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신청을 제출하고, 심사비준을 통과해야만 설립할 수 있음

7) 재심사/무효선고를 위한 예비심사 프로세스를 가리킨다.

8) http://www.gov.cn/zhengce/2019-11/24/content_5455070.htm (2022. 04. 07일 방문)

9) 전리는 발명전리(특허 발명), 실용신안 전리(등록실용신안), 디자인 전리(등록디자인)로 나뉜다.

10) 刘永超, 史冉, “浅析知识产权保护中心建设的国际经验借鉴”, 科技促进发展(2017年4期), 275면.

11) 중국(베이징,北京)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허베이,河北)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산둥,山东)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상하이,上海)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지안쑤,江苏)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저장,浙江)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푸젠,福建) 지식 재산권 보호 센터, 중국(산시,山西)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간쑤,甘肃)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쓰촨,四川)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헤이룽장,黑龙江)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길림,吉林)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랴오닝,辽宁)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광둥,广东)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내몽고,内蒙古)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12) 중국(지안쑤,江苏) 중국(태주,泰州)지식재산권보호센터, 중국(우시,无锡)지식재산권보호센터, 중국(항저우,杭州)지식재산권보호센터, 중국(영덕,宁德)지식재산권보호센터, 중국(낙양,洛阳)지식재산권보호센터, 중국(곤명,昆明)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장춘,长春)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지린,吉林)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랴오닝,辽宁)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대련,大连)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산야,三亚)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내몽고,内蒙古)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13) 사업지원의 분야는 차세대 정보 기술,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해양 기술, 고무 타이어, 기계 장비, 화학, 현대 식품, 신소재 산업, 생물학적 약은, 로봇과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생물 제조, 현대 직물, 첨단장비산업, 신형기능과 구조재료산업, 의료산업, 사물인터넷, 지능제조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및 부품제조, 반도체, 전자정보산업, 광전자 정보, 장비제조, 중의약, 크레인설비와 전지, 선진제조, 석유채굴가공, 현대화농업산업, 생물, 건자재, 인터넷, 가전 제품, 전기, 및 해양을 포함한다.

- 지역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사업기관(事业单位)으로 위치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상응하는 지역 시장감독관리국(지식재산권국)¹⁴⁾의 하위 조직임
- 또한, 각 지식재산권보호센터 간에는 예측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사업범위

-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사업범위는 크게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상표, 식물 신품 종의 예비심사, 전리권 확인과 권익보호 지원으로 분류되며, 지방 산업 구조와 전담인력 상황에 따라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사업범위도 다름
- 그러나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핵심역할은 주로 신속한 심사, 신속한 전리권 확인, 신속한 권익보호이므로 모든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예비심사와 권익보호 사업을 수행함
 - ※ 예를 들면, 광둥성 경제구조와 지식재산권 인재의 다원화, 중국 (광둥)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사업범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예비심사, 상표심사, 재심사 및 무효, 권익보호 지원, 사법감정, 정보서비스, 운영거래, 교육훈련, 분석평의를 포함함¹⁵⁾. 한편, 텐진직할시 경제구조와 지식재산권 인재는 제한되어 있으며, 중국 (텐진) 지식재산권보호센터가 수리한 사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예비심사, 전리권 확인, 특허 권 평가보고, 신속한 권익보호 뿐임¹⁶⁾.
- 현재 대부분의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서는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재심사 및 무효선고 청구에 대한 신속한 예비심사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으며 상표, 식물신품 종 등에 대한 신속한 예비심사 서비스는 없음

○ 사업내용¹⁷⁾

- 중국 (광둥)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사업범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예비심사, 상표심사, 재심사 및 무효, 권익보호 지원, 사법감정, 정보서비스, 운영거래, 교육훈련, 분석평의를 포함함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예비심사

- 광둥성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신속협동 보호 기능을 담당하며, 1기는 주로 차세대 정보기술과 생물산업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신속예비심사 서비스

14) 각 지식재산권국은 상응하는 시장감독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다.

15) https://www.gippc.com.cn/ippc/sbsc/fwzl_list.shtml(중국 (광둥) 지식재산권보호센터 공식 홈페이지 참조. 2022. 04. 10일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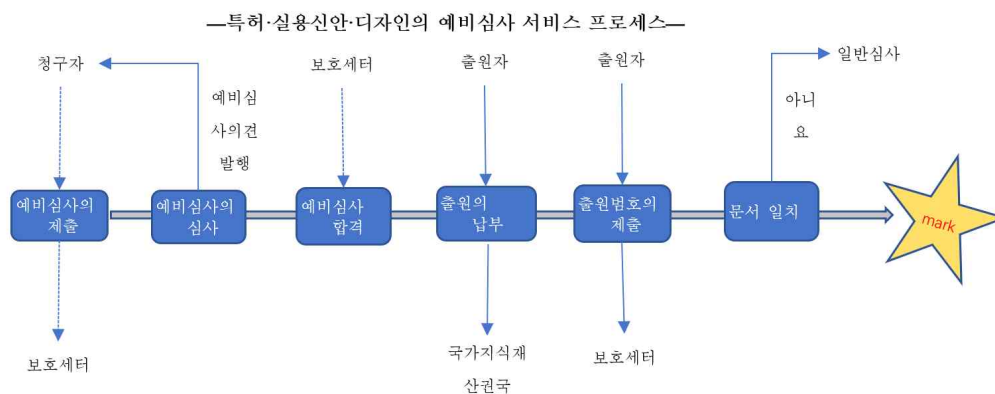
16) <http://www.tjippc.cn/info/infodetails.html?id=INFO2f8eb0ca-8631-43d3-b7cb-a04ee28178eb&type=us>중국 (텐진) 지식재산권보호센터 공식 홈페이지 참조. 2022. 04. 10일 방문)

17) 지역 산업 구조와 지식재산권 인력의 배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사업범위도 다름. 중국 (광둥)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사업범위는 기타 지역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사업범위와 비교하여 비교적 전범위에 걸쳐 이루어짐. 중국 (광둥)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사업내용을 예로 설명함.

를 진행함

- 예비심사를 통과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에 대해 보호센터는 신속 심사를 진행한다고 표기함

[그림 3]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예비심사 프로세스¹⁸⁾



② 상표 심사

-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의 위탁을 받아 상표 관련 업무의 현장 출원 수리 및 상표 출원의 형식 심사, 상표출원의 실질 심사, 상표의 변경·양도·연장 신청 심사, 지리적 표시 상표 심사,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및 상표 전용권 질권 등기 등 업무를 담당함
- 지식재산권국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가 맡긴 기타 사항을 처리함

③ 재심사 및 무효

- 재심사 및 무효 선고 요청에 대한 신속한 예비심사 서비스를 제공함
- 안건의 상황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순회 심리 또는 원격 심리를 진행할 것을 제청함

[그림 4]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재심사 및 무효선고 예비심사 프로세스¹⁹⁾

18) 프로세스 도면의 출처: <http://www.bjippc.cn/ueditor/jsp/upload/file/20220325/1648197329626059143.pdf> (2022. 04. 11일 방문)

19) 프로세스 도면의 출처: [http://www.bjippc.cn/ueditor/jsp/upload/file/20220325/1648197329626059143.pdf\(2022. 04. 11일 방문\)](http://www.bjippc.cn/ueditor/jsp/upload/file/20220325/1648197329626059143.pdf(2022. 04. 11일 방문))

—재심사/무효선고를 위한 예비심사 프로세스—



④ 권익보호 지원

-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자문을 실시
-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며, 권리침해 판정에 대한 참고의견을 제공
- 지식재산권 조기경보 서비스 및 중대 경제무역, 투자와 기술 이전 활동
- 대형 스포츠 대회, 전시회 등에 대한 신속한 법적 지위 조회 및 권리침해 판정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

⑤ 사법감정

- 전국을 대상으로 사법기관, 행정집법부문, 기업, 사업기관 및 개인의 위탁을 받아 지식재산권 분쟁상 기술문제에 대하여 사법감정을 진행하고 감정과 관련된 자문을 실시
- 지식재산권 사법감정에는 주로 영업비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저작권, 상표, 기술계약,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사법감정이 포함됨

⑥ 정보서비스

-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는 주로 전 성 혁신주체와 사회대중을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상표, 지리표지,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과학기술문헌 등 지식재산권 정보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
- 광둥성 지식재산권 품질 모니터링 플랫폼(广东省知识产权质量监控平台)과 중점산업 네비게이션 경보 플랫폼(重点产业导航预警平台)에 의거하여 각종 지식재산권 데이터 통계 및 지식재산권 네비게이션 분석 서비스를 전개하고, 성 전체 산업 발전 및 정부 과학 정책 결정에 데이터 지지를 제공함

⑦ 기술 및 지식재산권 거래

- 과학기술 성과 및 지식재산권 이전전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운영과 부화전환 플랫폼을 구축
- 업계협회, 산업지식재산권연맹, 운영거래기구 및 선두기업과 연합하여 중점산업 지식재산권운영서비스를 공동으로 전개

-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보험, 담보, 자산평가 및 증권화 등 금융혁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

⑧ 교육훈련

- 인재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고, 전 성을 대상으로 첨단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을 전개하며, 혁신형, 복합형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

⑨ 분석 검토

- 중점 산업과 중대 기술 영역의 지식재산권 분석 등 프로젝트를 전개
- 정책 결정 부문과 실시 기관이 실시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현황과 합법성을 파악하도록 함
- 프로젝트 실시 과정 중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식별, 예방 및 대응하며, 중대 경제와 과학기술 활동 정책에 서비스를 제공함

○ 지원대상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예비심사의 지원대상은 기업과 사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은 예비심사의 범위에서 제외
- 상표 출원 및 권익 보호의 지원 대상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함

○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예산

-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예산은 해당 지역의 정부 재정교부금, 전년도 예산 잔액의 이월 및 보호센터 자체 운영 수입으로 중앙정부는 보호센터의 예산을 부담하지 않음
- 지역 지식재산권보호센터 건설의 초기 예산은 해당 지역 정부가 전액 재정으로 지불하며, 지식재산권보호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후 예산은 해당 지역 정부의 재정교부금, 전년도 예산 잔액의 이월 및 보호센터 자체 운영 수입으로 충당
 - ※ 예를 들어 저장성(浙江省)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2022년 연간 수입 예산은 2752만1400위안이고 2021년 예산 잔액의 이월액은 706만4500위안으로 25.7%를 차지함. 정부 재정교부금은 1983만6900원으로 72.1%를 차지함. 예상 영업 수익은 2.2%인 62만원임.²⁰⁾

20) <http://zjippc.zjamr.zj.gov.cn/info/infodetails.html?id=INFO25a2e55d-c843-41ba-a94f-226ae75cdabc> (중국 (저장) 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21년 예산 공개, 2022. 04. 10일 방문)

□ 지역 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

○ 설립 목적

- 2016년 이전 일부 지방 정부는 지방 경제 발전의 수요에 따라 지식재산권서비스 센터를 설립함
- 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의 설립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립하며, 사업 범위도 지방 정부가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함
- 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 명칭에 관하여 각 지역의 호칭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로 호칭하지만 "지식재산권서비스 촉진 센터(知识产权服务促进中心)"(예를 들어 쓰촨성(四川省)), "지식재산권 연구와 서비스 센터(知识产权研究与服务中心)"(저장성(浙江省))라고도 불리고 있음

○ 설치 현황

- 사업기관에 속하는 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는 13개, 그 중 성급 센터 7개²¹⁾, 시급 센터 6개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음²²⁾.

○ 운영조직

- 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는 사업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상응하는 지역 시장감독관리국(지식재산권국)의 하위조직임

○ 사업내용

- 각 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는 통일된 업무범위 규정이 없고, 지방정부가 산업구조에 근거하여 업무범위를 설치하며, 주로 특허실시계약 비안, 사법감정, 지식재산권 교육 조직, 특허기술 조사, 특허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

○ 예산

- 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의 예산은 해당 지역의 정부 재정교부금, 전년도 예산 잔액의 이월 및 보호센터 자체 운영 수입으로 운영되며, 중앙정부는 보호센터의 예산을 부담하지 않음

21) 저장성(浙江省)에는 지식재산권 서비스 센터가 2개(저장성(浙江省)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 및 저장성(浙江省)지식재산권연구와 서비스센터) 설치되어 있다.

22) 내몽고(内蒙古)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 이창시(宜昌市)지식재산권보호 및 서비스센터, 산시성(陕西省)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 베이징시(北京市)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 청두시(成都市)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 쓰촨성(四川省)지식재산권서비스촉진센터, 항저우시(杭州市)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 상하이시(上海市)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 저장성(浙江省)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 안후이성(安徽省)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 대학교 국가 지식재산권정보서비스센터, 국가 지식재산권국 고객서비스센터, 저장성(浙江省)지식재산권연구와 서비스센터.

□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지식재산권 서비스센터의 차이점

- 지방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색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과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16년부터 지방에 신속한 심사, 신속한 권리권 확인과 신속한 권익보호를 일체화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설립을 추진
 - 즉,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지원하며, 심사비준을 거쳐 통과되어야 지방에서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
 -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역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 일부 권리를 부여함
- 지식재산권 서비스센터는 지방정부가 지방산업 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하며, 국가 지식재산권국에 신청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별도의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²³⁾는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의 권능을 가지지 않음
- 사업 범위의 측면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 부여한 권능을 제외하고, 사법감정, 특허검색분석, 권익보호 등 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와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사업 범위가 중첩됨
- 따라서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의 모든 사업범위를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향후 기존의 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를 말소시키거나 지식재산권보호센터와 합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23) 저장성(浙江省)지식재산권 연구와 서비스센터는 제외한다. 저장성지식재산권 연구와 서비스센터는 일명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항저우(杭州) 대리처로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재심사 및 무효청구의 우선 심사 업무를 수리할 수 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법적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05년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마다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동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치하여 특구육성 사업, 제도 지원, 특구개발 관리, 특구 인프라 지원 등 수행

□ 사업 내용

- (개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목적)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기술·아이디어→사업화(창업)→기업성장→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현
- (추진체계) 과기정통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수행
- (지원 현황 및 성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의 5개 지역이 연구개발특구와 강소특구를 지정하고, 기술창업, 특구연구성과 사업화, 창업 지원, 해외진출, 투자연계 등을 지원

□ 운영 체계

-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연구개발특구본부 및 강소특구* 지원본부 아래 대부분 기획경영실 및 기술사업화팀의 구성으로 운영됨

*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Innovation)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Town)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여 R&D특구로 지정·육성. 현재 서울 홍릉, 경기 안산, 충남 천안아산, 충북 청주, 전남 자주, 전북 군산, 경남 김해, 경남 진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경북 구미, 울산 울주가 지정됨

- 각 연구개발특구본부의 기술사업화팀 및 기획경영실에서 세부 사업별 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표 3] 강소특구 지정현황

광역시	기초	기술핵심기관	특화분야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대, 고려대	• 디지털 헬스케어
경기	안산	한양대 에리카	• ICT융복합 부품소재
충남	천안아산	한국자동차연구원	• 차세대 자동차 부품
충북	청주	충북대	• 스마트IT 부품·시스템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전북	군산	군산대	•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경남	김해	인제대	• 의생명·의료기기
	진주	경상국립대	• 항공우주 부품·소재
	창원	한국전기연구원	•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경북	포항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첨단 신소재
	구미	금오공과대	• 스마트제조시스템
울산	울주	울산과학기술원	• 미래형 전지

[그림 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조직도



(1) 연구개발특구관리체계

-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하도록 유지·관리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 교육·연구시설과 주거·상업 및 문화복지시설의 체계적인 배치를 통한 연구개발특구의 균형적 발전도모
 -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취지 및 입주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입주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관리
 - 녹지 및 원형지는 가능한한 원형대로 보존·관리
-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존
 - 교육·연구·주거기능이 상호 조화된 과학전원도시 지향
 - 연구분위기 저해 시설물의 설치제한을 통한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 연구기관 주변 녹지공간의 적극적인 홍보 및 보전
- 지역경제발전의 거점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입주기관간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 유도
 - 특구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정보교류를 통하여 지역산업계 지원
- 연구개발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립·고시

[그림 6] 연구개발특구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



(2) 강소특구추진체계

- (역할 구분) 강소특구의 주요 구성원이자 운영 동반자인 기술 핵심기관과 지자체의 역할 · 책임 명확화
 - 기술핵심기관은 강소특구 육성사업 기획·집행에 공동 참여 및 혁신주체 연계·협력 등에 중요 역할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라 육성사업의 예산 부담(재정) 및 강소특구 지원 관련 조례 개정(행정) 등을 이행
- (지원) 개별 강소특구마다 소재 지역의 특성 · 강점을 활용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플랫폼 프로그램」의 체계적 추진
 - 지역 밀착형 기술사업화, 전략산업 고도화, 특화분야 전문인력 유치·양성·활용 및 지역 산·학·연 연계·협력 확대 등 추진
 -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주체 참여 견인, 지역 이슈 해소 및 주력 산업·업종 전환의 교두보 역할 등 수행

[그림 7] 강소특구 추진체계



나. 중소벤처기업부-산업기술단지

□ 법적 근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산업기술단지를 통해 지역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단지 내 시설 설치, 출연금 지급·사용 등 규율

□ 사업 내용

- (목적) 지식기반 산업화 촉진, 기술혁신 및 지역발전,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력 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테크노파크 설립) 민법 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국에 18개의 테크노파크 지정하였고 2019년 세종테크노파크가 추가 되어 현재 총 19개의 테크노파크가 지정됨
- (지원내용) 지역의 배후산업과 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제조업 및 중소기업에게 현장밀착형 지원 제공

[표 4] 테크노파크 주요 기능 및 지원내용

주요기능	초기에는 기업보육, 기술지원 등에 집중하였으나, 지역정책 사업기획, 기업지원 서비스 등으로 점차 기능을 확대	1단계: 입주기업 지원사업 중심 - 연구개발, 창업보육, 정보유통, 교육훈련 지원 등
		2단계: 지역산업육성 정책 수립 - 지역·산업 성장전략 수립, 모니터링기업군 관리, 지역산업육성자원 DB 구축 등
		3단계: 기업지원 네트워크 허브 - 기업특성 조사, 산학연 연계협의회 운영, 기업거점 역할 수행
지원내용	1단계는 공간조성에 집중, 2단계는 S/W 사업 중심으로 전개, 3단계는 거점기능 중심으로 추진	1단계(98-07년) : 지역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TP를 설립하고, 입주시설과 시험생산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TP 조성사업’추진
		2단계(08-12년) : 기술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조직기반 구축과 기술·인적자원 연계협력 등 S/W 사업 중심의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추진
		3단계(13-15년) : TP를 지역혁신의 거점이자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제공의 종합창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TP 운영지원사업’ 추진

□ 운영체계

- (특징) 한국형 테크노파크는 각 수행 주체간의 합의와 협력, 지역별 통합 예산 운영 및 관리, 법령에 의한 운영 보장, 지역 간 경쟁 유도과 중앙 관리 등 기존 해외 STP와 차별적인 운영상의 특징을 보유
- (거버넌스)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
 - 중앙에서 구성한 프로그램을 지방에서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구성
- (전략산업) 지역별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략산업 특화 지원
 - 각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형태의 전략산업지원체계 개발

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 법적 근거

- 저작권법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목적으로 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지원사업의 하나로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 사업 내용

- (목적) 지역별 저작권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 1인 창조 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제공을 통해 저작권 창출 및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각 센터를 통한 저작권 지역거점 확보 및 전국적 지원체계 마련
- (센터 현황) 현재 강원, 경기, 대구, 대전 등 13개 센터 운영

[그림 8]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조직



- (주요업무)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저작권 사업화, 전시회 참가 지원, 맞춤형 저작권 교육,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 제공*

* 9개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를 통해 3,000개 이상 중소기업에 서비스 제공

- ‘저작권 사업화’를 희망하는 유망 콘텐츠 신생기업 등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 집중 지원과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저작권 창조기업의 육성 도모
- 소프트웨어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방안 및 개선사항 등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체계

- (센터구성) 일반적으로 사업총괄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사업관리/예산지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담당²⁴⁾
- 한편, 각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전담직원은 현재 해당 지역 산업진흥원 등에 소속된 직원이 담당하고 있음

라. 산업통상자원부-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국가혁신융복합단지)

□ 법적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해제·변경·육성에 관해 규정

24) 참고: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 <http://dcsc.dip.or.kr/home/intro/groupintro/pageView.u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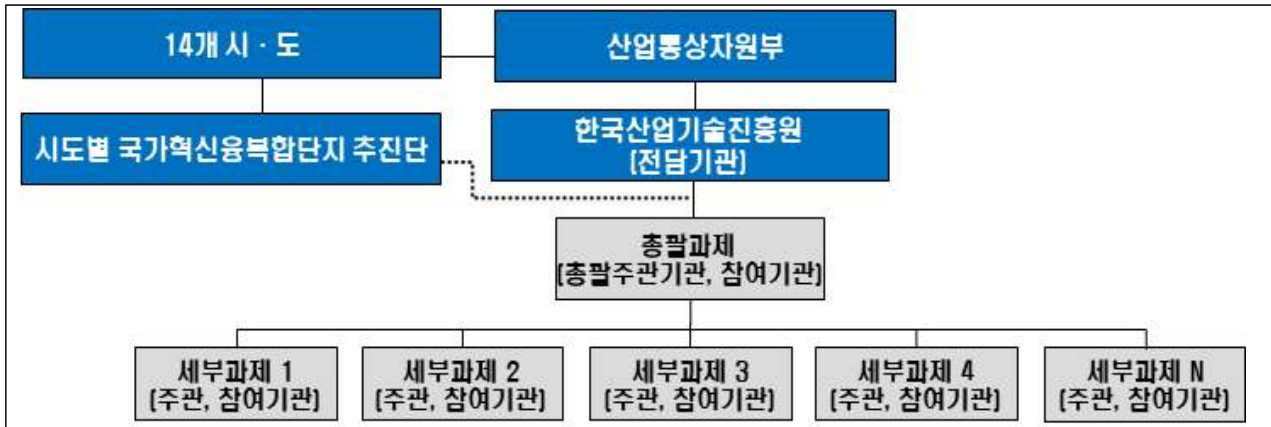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목적) 지리적 근접성을 갖춘 지역의 혁신거점*들을 연계하여 신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新성장거점으로 육성
 - *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자구역,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 R&D특구 등
 - * (거점간 거리) 반경 20km(광역시는 10km)내에 모든 거점 위치, (최대 면적) 15km²
- (사업 운영체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사업의 세부 추진, 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며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이 구성되어 클러스터의 육성을 지원
- 종래 지역별 나눠주기식 예산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주도의 산업육성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과 연계하여 규제자유특구로서의 특례를 부여한 것이 특징
- 지방투자보조촉진금 우대지역의 설정, 특별 금융상품출시, 사업화 자금 처리 용자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기업의 클러스터 유치 및 재정적 보조를 추진
- (지원내용) 시도별 신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 추진
 - (R&D)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기술 개발,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 (비R&D) 융복합단지 기업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글로벌 연계,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등 추진
-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분		대상	비고
총괄 과제	주관기관	①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해당 시도 내), ②기업*(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제한없음
세부 과제	주관기관	①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해당 시도 내), ②기업*(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제한없음

- * 지역혁신기관 : 시도별 TP등 기업지원기관, 시도연구원, 지역특화센터, 지자체 연구소 등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지역 내 기관
- ** 다만, 현재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있지 않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할 경우 해당 시도 융복합단지에 1단계 사업기간 내 입주함을 원칙으로 함

□ 운영체계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지역별 총괄지원(육성계획 수립 및 관리, 성과관리 등),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비R&D 사업 추진
 - * 현재 각 지역 테크노파크 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
- (총괄과제 컨소시엄) 총괄과제는 해당 컨소시엄의 모든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총괄주관기관 등으로 구성(기술개발 병행)
 - * 총괄주관책임자는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컨소시엄의 모든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세부과제 컨소시엄)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컨소시엄 권장사항) 컨소시엄의 구성은 산.학, 산.연, 산.학.연 등의 다양한 주체를 결합하여 구성함을 권장

마.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화산업육성+(R&D 및 비R&D)

□ 법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등에 따라 실시

□ 사업 내용

(1) 지역 스타기업 육성(R&D)

- (목적)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스타기업으로서 신제품 상용화 계획을 제시 하고 연구 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부품 개발 등

(2) 지역주력산업육성(R&D)

- (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개발 등

(3)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 (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비R&D) 과제 지원
 -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

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운영체계

○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사업실

○ (지역별 관리기관): 14개 시·도 지역사업평가단*

* 지역사업평가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민간기관으로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전통사업, 혁신도시연계지원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등 지역산업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 및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함

[표 5] 14개 시·도 지역사업평가단

지역	관리기관
부산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대구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1003호
대전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IT전용 벤처타운 121호
광주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울산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강원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층
충북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충남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전북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전남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빛가람동)
경북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경남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본부동 405호
제주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세종	(재)세종지역사업평가단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5층 501호

[참고]

명칭: 지역사업평가단(<http://www.irpe.or.kr/index.do>)

연혁:

- (2013년)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또는 지역별 테크노파크 부설 산업지원단(평가단) 등의 통합을 통해 지역사업평가원으로 출범
- (2015년) 지역산업평가관리기관으로 개편(산업부) → 재단 설립허가를 통해 (재) 지역사업평가단 출범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중국도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사업 운영
 - (일본) 지적재산 추진계획,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地域知財活性化行動計画)에 따라 지역 지식재산 진흥 정책 수립
 - 중앙부처인 특허청과 경제산업국 지적재산실/지역지재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실시(권리화부터 해외진출까지)
 - (중국)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은 국가지식산업국이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지식재산권 서비스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지식재산권 서비스센터 모두 지식재산 창출부터 지식재산 데이터 분석·활용, 지식재산 거래 등 활용에 이르는 지원을 실시
- 타 부처의 지역 사업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책임이 명확화, 지역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로 인식
 - 주로 중앙정부가 사업을 관리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
 - 종래 지역별 나눠주기식 예산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에 지역 주도의 산업육성 권한을 부여
-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면서 지역의 고유 지식재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 필요
 - 지역 지식재산의 단순한 권리화 지원 활동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과 창업, 사업화의 연계, IP R&D 지원 등 우수한 지역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할 필요
 - 창업, 사업화, IP-R&D 지원 등 지식재산 고도화 사업은 특허청 내 별도의 전문 조직 신설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는 한편,
 - 단순 권리화 지원 등 사업은 중앙정부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Ⅲ. 현행 중앙정부의 지역 지식재산 사업 재편 방안

1 지역 지식재산센터(RIPC) 사업 개요

□ 주관 부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전문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2004년 1월 지역지식재산센터 설립(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에서 개편)
- 지역지식재산센터 : 17개 광역센터, 10개 기초센터
 - 사업예산(2021년) : 440억 원(국고 50% +지방비 50%)

□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17개 광역센터, 9개 기초센터)

- 운영주체별 분류 (광역센터)
 - 진흥원 : 2개 (서울, 강원)
 - 테크노파크 : 3개 (경기, 대전, 전남)
 - 상공회의소 : 8개 (경남, 경북, 대구, 제주, 충남, 충북, 울산, 인천)
 - 한국발명진흥회 : 4개 (전북, 광주, 세종, 부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광역센터 (17개)	서울 (서울산업진흥원)
	경기 (경기테크노파크)
	인천 (인천상공회의소)
	강원 (강원경제진흥원)
	충남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북 (청주상공회의소)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전북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회)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광주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경북 (포항상공회의소)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대구 (대구상공회의소)
	울산 (울산상공회의소)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제주 (제주상공회의소)
	세종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회)
기초·자립(9개)	수원, 부천, 태백, 춘천, 충주, 서산, 안동, 구미, 진주

□ 주요 센터 세부운영사업 비교(2021년)

(단위 : 백 만 원)

구 분		서울지식재산센터		경기지식재산센터		인천지식재산센터		강원지식재산센터		제주지식재산센터	
		사업명	예산	사업명	예산	사업명	예산	사업명	예산	사업명	예산
지자체 고유 사업	지식재산권 창출	해외 권리화지원	303	-	-	-	-	지식재산권 권리화 활성화 지원	464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100
	지식재산권 보호	심판소송 침해물품단속 지원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143 112	심판소송 지원 분쟁대응지원 기술탈취 예방 홍보	850	심판소송 지원 분쟁대응지원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660	-	-	-	-
	지식재산권 교육 활용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인식조사 지식재산 포럼	212	-	-	-	-	강원 창의아이디어 공모전 무한상상실 강원과학기술대추전	50 50 215	-	-
특허청 지방비 매칭	IP스타 기업육성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717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3,239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1,220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1,460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734
		IP바로지원서비스	116	IP바로지원서비스	978	IP바로지원서비스	330	IP바로지원서비스	360	IP바로지원서비스	420
		IP나래프로그램	592	IP나래프로그램	722	IP나래프로그램	560	IP나래프로그램	900	IP나래프로그램	214
		IP디딤돌프로그램	200	IP디딤돌프로그램	214	IP디딤돌프로그램	360	IP디딤돌프로그램	380	IP디딤돌프로그램	320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재능나눔 IP경영인클럽	16	재능나눔 IP경영인클럽	17	재능나눔 IP경영인클럽	-	재능나눔 IP경영인클럽	172	재능나눔 IP경영인클럽 IP페스티벌	100
지자체 고유 사업	기타	IP상담·컨설팅	-	IP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경기도청 지식재산권 창출 및 운영관리	210 130	기술혁신 IP기업 청년취업연계 프로젝트 특허기술매일링서비스 인천시청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700 110	취업연계 IP지역인재양성	400	우수특허기술 시제품제작지원	90
특기사항		서울시 고유사업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교육) 별도 운영		분쟁대응지원,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사업 신규운영 (2019년)		IP투자조합결성 운영 별도 운영 (펀드조성액 : 33,000백만원, 운영비 10억원 별도) 한-중 지식재산권 협력 사업에 추가 분쟁대응 신규운영 (2020년)		지식재산권 권리화지원 신규운영_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2019년)		지식재산권 권리화지원 우수특허기술 시제품제작지원 신규운영 (2019년)	

※ 서울·경기센터 예산 순수 사업비만 표기, 인천·강원·제주센터 예산 사업비·인건비·운영비 포함 표기

□ 지식재산권 창출

- (서울) 해외 권리화지원
- (강원) 지식재산권 권리화·활성화 지원
- (제주)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 (서울)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지원,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경기) 심판소송 지원, 분쟁대응지원, 기술탈취 예방 홍보
- (인천) 심판소송 지원, 분쟁대응지원,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교육·활용

- (서울)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인식조사, 지식재산 포럼
- (강원) 강원 창의아이디어, 공모전, 무한상상실 ,강원과학기술대축전

□ 기타

- (서울) IP상담·컨설팅
- (경기) IP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경기도청 지식재산권 창출 및 운영관리
- (인천) 기술혁신 IP기업 청년취업연계 프로젝트, 특허기술메일링서비스, 인천 시청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 (강원) 취업연계 IP지역인재양성
- (제주) 우수특허기술 시제품제작지원

[그림 9] 2022년 서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지원업무 구조



※ 출처 : 2022년 서울지식재산센터 소개자료

3

중앙정부의 위임사업

□ 지역지식재산센터 내 특허청 지방비(5:5) 매칭사업(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 IP스타기업육성

-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 IP바로지원서비스
- IP나래프로그램
- IP디딤돌프로그램

○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재능나눔, IP경영인클럽

□ 특허청의 지역 지식재산 사업 구분

담당	사업명	중앙고유 사업	지방연계 사업	비고
산정	■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		
	· 지재권 연구 인프라 구축	○		
	- 지식재산 연구정보 수집·분석			
	- 지식재산 연구저변 확대			
	- 지식재산 기초연구 활성화			
	- 지식재산 연구기관 운영지원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활용	·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정보 조사·분석	○		
	■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 지원			
	· 지식재산사업화 지원			
	-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인력)	○		
	- 지식재산 창출 활용 지원(인력)	○		
	- IP제품혁신 지원(사업화)	○		
	- 지식재산 활용정보 시스템	○		
	· 지식재산 거래지원			
	- IP중개 서비스 지원	○		
	- IP 거래기반 구축	○		
	· 지식재산 평가지원	○		
	· 지식재산 서비스 활성화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채용 지원	○		
	- 해외시장 수요 창출·지원	○		
	■ 모태조합출자	○		
	■ 지식재산공제	○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		

	■ 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o		
지역	■ 지식재산 창출지원			
	·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o	5:5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o	5:5
	· IP협력기반 강화		o	5:5
	· 시니어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o		
	· 소상공인 IP역량 강화		o	5:5
	■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 IP 디딤돌 프로그램		o	5:5
	· IP 나래 프로그램		o	5:5
	·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o		
	■ 발명장려문화 조성			
	· 발명장려행사	o		
	· 국유특허권 관리 및 활용 촉진	o		
	· 직무발명활성화	o		
	· 발명인의 전당 운영	o		
	■ 여성발명진흥			
	· 여성IP 환경기반 조성	o		
	· IP여성기업 사업화 지원	o		
인력	■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o		
	·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 지식재산 선도대학 지원	o		
	-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	o		
	- 산학협동형 교육 운영	o		
	· 취업연계 IP 지역인재 양성		o	5:5
	· 기업 등의 지식재산 교육			
	- 기업 지식재산 실무자교육	o		
	- 기업 CEO 교육(산정과)			
	- 변리사 제도운영	o		
	■ 발명교육 활성화			
	·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 지역 발명교육 인프라 지원		o	시·도 교육청
	- 초중고 발명교육 확산	o		
	- 발명교원 육성	o		
	· 발명(영재)교육 강화			
	-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o		
	- 발명(영재) 교육체계 구축	o		
	· 특성화고 발명·특허 교육			
	- 고교 발명·특허 교육지원	o		
	- 일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발명교육 지원	o		
	·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발명·창의력 대회			
	-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o		
	-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o		
	-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o		
창출	■ 특허기술조사분석(R&D)			
	·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 특허동향조사 지원	o		

	- 특허 분석·관리 역량 강화 지원	o		
	· 정부 R&D 특허성과 종합관리			
	- 정부 R&D 특허성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o		
	-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o		
	-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o		
	■ IP-R&D 전략지원(R&D)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o	o	붙임
	· IP-R&D 확산 인프라 구축	o		
	·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o		
	■ 표준특허 창출지원(R&D)			
	· 표준특허 전략지원			
	-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o		
	- 표준특허 전략수립	o		
	- 표준특허 후속관리	o		
	· 표준특허 인프라 구축			
	- 표준특허 정보서비스	o		
	-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o		
보호	■ 해외 지식재산권보호활동 강화			
	·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o		
	· 수출기업의 지재권분쟁대응 경쟁력 강화			
	- 국제 지재권 대응전략 지원	o	o	일부 지역 (대전·인 천·충남) 컨설팅 비용 매칭
	-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o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o		
	■ 국내 지식재산권보호활동 강화			
	·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o		
	·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o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및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o		
	-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허위표시 근절 등]	o		

4

중앙정부의 지역 지식재산 사업 재편방안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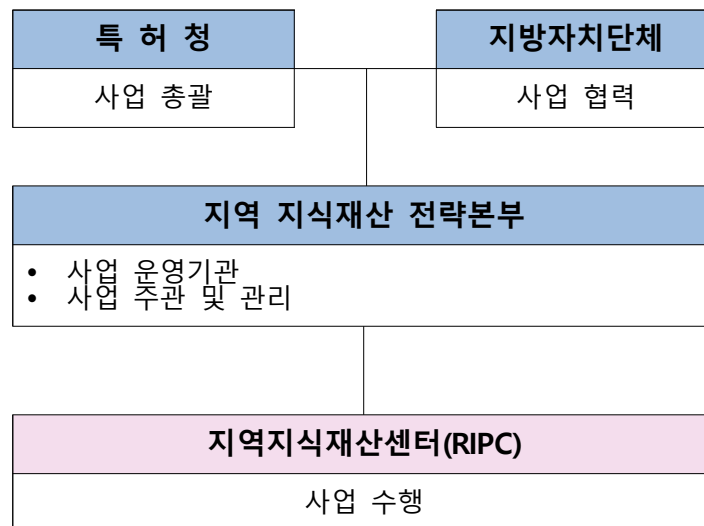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주요사업 지방연계 검토

- 지역 지식재산의 단순한 권리화 지원 활동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과 창업, 사업화의 연계, IP R&D 지원 등 우수한 지역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할 필요
 - 창업, 사업화, IP-R&D 지원 등 지식재산 고도화 사업은 특허청 내 별도의 전문 조직 신설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는 한편,
 - 단순 권리화 지원 등 사업은 중앙정부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 운영체계

- (주관부처)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또는 별도조직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 (전담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 지역 지식재산 전략본부(지역지식재산진흥법 제10조)
- (수행기관) 지역지식재산센터

[그림 10]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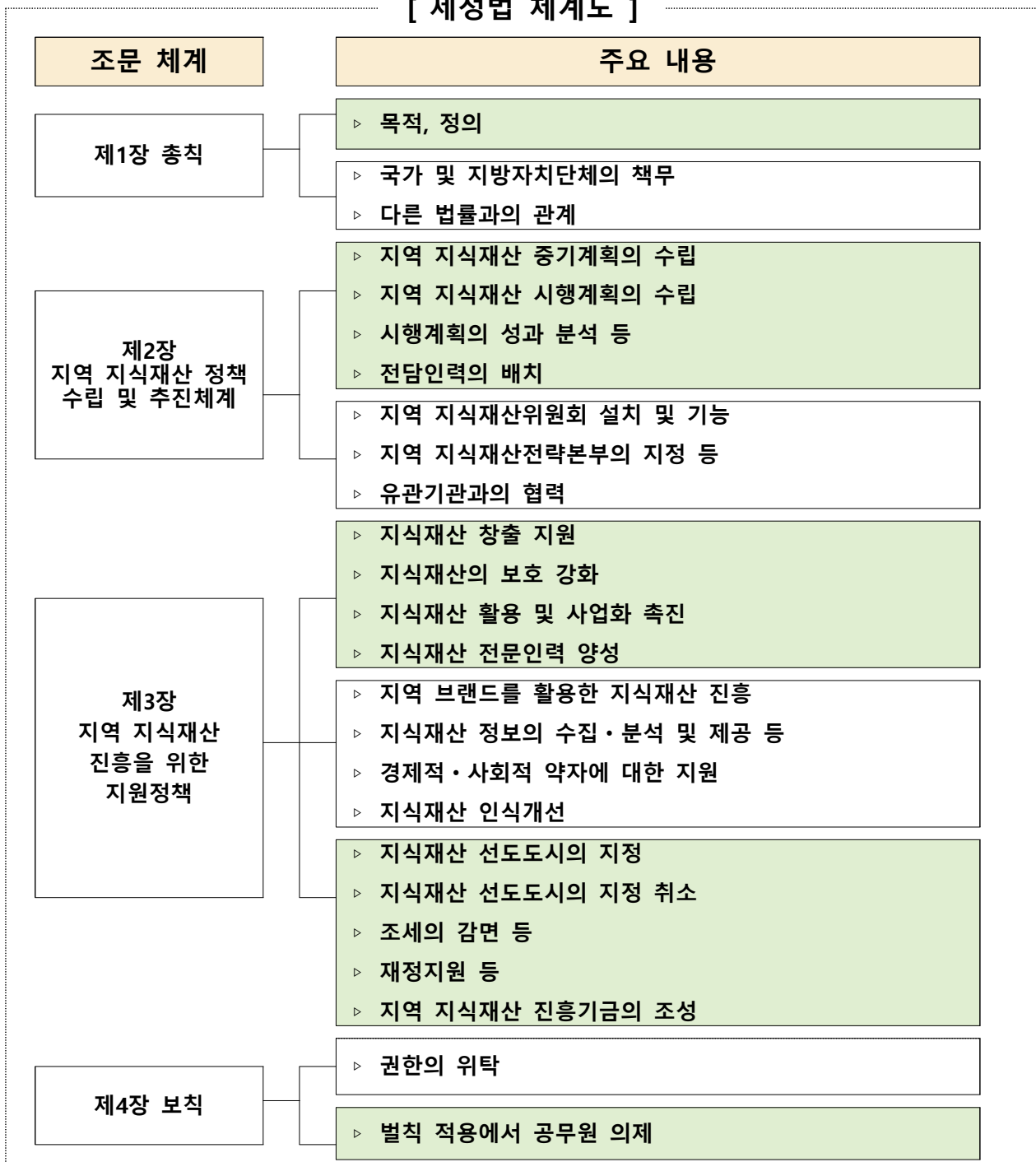


※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상 지역 지식재산 전략본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체계상 지방자치단체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현재 중앙정부의 지역 지식재산 사업이 고유사업, 위임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 지식재산 전략본부 상위에 특허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위치시킴

IV. 「지역 지식재산진흥법」 시행령 및 지방 지식재산 조례 제·개정안

1 「지역 지식재산진흥법」의 주요내용

[제정법 체계도]



□ 총칙(안 제1~4조)

- (개요) 법 제정의 목적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 등 기본원칙 명문화
- (내용) 목적, 용어 정의, 국가·지자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적	▶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간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정의	▶ (지식재산 관련 용어) 「지식재산기본법」에 규정된 '지식재산', '신지식재산', '지식재산권',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정의 승계
국가 등의 책무	▶ (국가 및 지자체)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규정 ▶ (조례)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타법과의 관계	▶ 지역 지식재산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정책적 고려사항) 지자체 조례 제·개정시 해당 조례가 지역지식재산 진흥법상의 시책등과의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제시할 필요

□ 지역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안 제5~11조)

- (개요) 지자체의 주도적인 지식재산 정책 기획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 구축 및 계획의 수립 근거* 등을 명시

* 기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역에서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되는 추진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지역 확산 및 내재화

- (내용) 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성과분석, 지자체의 전담인력 및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정, 유관기관과의 협력

계획의 수립	▶ (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 ▶ (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 지역 지식재산 사업추진 내실화를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지식재산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 ▶ (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성과분석) 광역지자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특허청장에게 제출,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
정책추진 체계 구축	▶ (전담인력) 지자체는 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각종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도록 규정 ▶ (지역 지식재산위원회) 지자체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자체장 산하에 각종 IP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 광역지자체의 장은 동 법상 지역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유관기관과의 협력	▶ (유관기관 협력)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역 내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지원사업 공동 추진 근거 마련

- (정책적 고려사항) 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성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특허청 내 별도의 관련 부서 또는 인력 신설 필요

□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안 제12~25조)

- (개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을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제공
- (내용) 지역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역 브랜드의 활용, 지역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지식재산 인식개선 사업 시행 및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및 조세감면, 재정지원, 지역 지식재산 진흥기금의 조성 등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활용 지원	▶ (창출) 지자체의 지역 내 주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지역 내 고유 특산물, 문화자산 등에 대한 창출 등 지식재산 창출 사업 지원 근거 ▶ (보호) 지역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 ▶ (활용) 지자체의 지역 내 지식재산 활용 창업, 지식재산권 거래 등 지식재산 활용 사업 지원 근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등	▶ (인력양성) 지역 내 초·중·고 및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과정 설치,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교육 지원 및 지역 내 지식재산 전문인력 취업지원 등 ▶ (인식개선)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재산 인식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전시회, 홍보활동 지원 및 IP관련 박물관·전시관 건립·운영 근거 마련 ▶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운영 근거 마련
재원 조성	▶ (재정지원)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기금) 지자체의 '지역지식재산 진흥기금' 조성·운영 근거 마련

- (정책적 고려사항)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지정 취소, 지역 지식재산 진흥 기금 조성·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특허청 내 별도의 관련 부서 또는 인력 신설 필요

□ 보칙(안 제24조, 제25조)

- (개요) 지자체의 지역 지식재산 관련 사업 운영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기관에 대한 위임·위탁 운영을 허용
- (내용) 지역 지식재산 사업의 민간기관 위임·위탁 근거 및 수탁 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법령 위반 시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

□ 하위법령(대통령령)으로의 위임

- 오늘날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증가, 경제·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입법 분야가 증대되면서 법률이나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할 필요
 - 단, 헌법은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제40조),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국회의 입법권 전부 또는 일부를 형해화(形骸化) 시키는 수준의 포괄적인 위임은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그 본질적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음
-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임
 -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 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²⁵⁾

□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상 하위법령(대통령령)으로의 위임사항 검토

- 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의 수립, 변경 및 제출에 관한 세부절차(법 제5조 제4항)
- 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상 경미한 사항 변경(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제출에 관한 세부절차(법 제6조 제3항)
- 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7조 제4항)
- 지역 지식재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법 제9조 제6항)
- 지역 지식재산 전략본부의 지정·운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 제5항)
-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가 사항(제12조 제1항~제17조 제1항)
 - 단, 지원사업의 내용 추가는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아닌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보다는 법률에서 보충규정 형태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25) 대법원 1995. 1. 24.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10. 13. 95누8454 판결, 대법원 2020. 9. 3.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법령입안심사기준 2021, 26면).

※ 예시) 법 제12조 제1항 7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법 제13조 제1항~17조 1항 동일)

○ 지식재산 인식개선의 지원사업의 추가사항(법 제19조 제1항) 및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법 제19조 제4항)

- 단, 지원사업의 내용 추가는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아닌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보다는 법률에서 보충규정 형태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예시) 법 제19조 제1항 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제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

- 또한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수정이 필요
 - 즉, 박물관·전시관 건립·운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8772호)」이 상위법률로서 동법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통상 특수목적에 따라 박물관을 설립할 경우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
- ※ 예시) 국립해양박물관법(법률 제14804호), 국립항공박물관법(법률 제16490호), 국립농업박물관법(법률 제18253호) 등

○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법 제20조 제3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심의위원회의 설치,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법 제20조 제8항)

○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21조 제3항)

○ 지식재산 선도도시에 대한 특허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법 제22조)

○ 지역 지식재산 진흥기금의 조성의 재원으로서 수입금(법 제 25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법률 간소화를 위해 법에 “9. 그 밖의 수입금”으로 표현 정정

3 지역 지식재산 조례 개정(안)

□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과 법체계상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는 표준 조례안 필요

○ 현행 조례의 명칭은 ‘지식재산 기본조례’,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지식재산 진흥 조례’ 등의 차이를 보였으나, 기본적인 구성과 내용은 대동소이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조례가 총칙, 지식재산 진흥계획,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촉진, 지식재산위원회, 보칙 등의 구성을 보임
- 그러나 일부 지자체 조례의 경우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유형과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있어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획일화된 규정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사례도 있음

※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조례의 경우, 품종보호에 관한 규정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품종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

○ 일부 지자체*의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기본으로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지역 지식재산 진흥 조례 표준(안)을 제시

* 여러 차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정비된 강원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에는 일부 의무조항을 두고 있어 해당 조항의 의무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됨

※ 성과분석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시행계획 성과 제출(의무), 전담인력의 배치(의무), 지역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무),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정(재량), 지역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동향조사 및 평가(의무),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재량), 침해물품 유통 및 수출입 근절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의무),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용 지원(재량), 활용(의무), 협력(의무), 지역 전문인력 양성 추진 및 비용지원(재량), 전문인력데이터베이스(재량), 지역브랜드 창출지원 및 비용 지원(재량), 지원요청(재량), 정보수집 및 비용지원(재량), 지식재산 인식개선(재량), 비용 지원(재량), 선도도시 신청(필요시), 지자체의 재정지원(임의)

-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주민 발명,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의 내용은 제외함
- 표준(안)의 제2장 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의 내용은 지역 지

식재산 진흥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됨

[표 6]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상 지자체 의무사항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	지자체 의무사항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상 내용
제1조	X	- 이 법의 목적은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제2조	X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조	O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함 -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각종 시책을 마련
제4조	X	- 타법과의 관계를 규정
제5조	O	- 광역지자체장은 5년마다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정책을 정하는 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 수립 의무 - 중기계획 수립시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 거쳐 확정 - 중기계획에 포함사항
제6조	O	- 광역지자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함 -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 규정
제7조	O	- 광역지자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차년도 2월말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 의무
제8조	O	- 광역지자체장은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지정 및 배치 의무
제9조	O	- 광역지자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위원회를 둔다
제10조	X	- 광역지자체장은 전담기관으로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 설치를 할 수 있음(재량)

		- 광역자치체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및 겸임 요청 가능(재량) - 국가 및 광역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략본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출연 및 보조 가능(재량)
제11조	X	- 유관기관과 협력 가능
제12조	X O O	- 국가와 지자체는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여러 사업 추진 가능, 비용지원 가능(재량) - 자치체장은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 실시 의무 - 지자체장은 연구개발 평가가 창출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 필요
제13조	X O	- 국가와 지자체는 지식재산 효과적 보호 지원사업 추진 가능, 비용지원 가능 - 지자체는 침해물품의 제조유통 및 수출입 근절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의무
제14조	X O O	-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화 촉진 사업추진 및 비용지원 가능 -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기법 및 평가체계가 지역내 지식재산 거래 및 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의무 - 지자체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 촉진 의무
제15조	X	- 국가와 지자체장은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가능, 비용지원 가능 - 지자체장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능
제16조	X	- 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 브랜드 활용 지식재산 지원계획 추진 및 비용지원 가능 - 지자체장은 지역 브랜드 활용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 요청 가능

제 17조	X O	- 지자체장은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촉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가능, 비용지원 가능 - 자자체 장은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의무
제 18조	O	- 지자체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의무
제 19조	X	- 지식재산 인식개선 지원 가능 및 비용지원 가능 - 박물관 전시관 등 가능 - 박물관 전시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가능
제 20조	X O - - - -	-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지정 및 운영 가능 - 지자체장은 신청하는 지자체장은 예비사업 실시(의무) - 조성계획 포함사항 - 특허청장은 지정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 특허청장 선도도시 지정 가능 - 특허청장은 기간연장 가능
제 21조	X	- 특허청장의 선도도시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특허청장 청문회 실시
제 22조	X	-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
제 23조	X	- 국가 및 지자체는 세재지원 가능
제 24조	X	-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재정에 관한 지원 가능
제 25조	X	-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 진흥기금을 설치 가능
제 26조	X	- 자자체장은 전략본부 또는 지역 지식재산 단체에 위탁 가능
제 27조	O	- 벌칙의 공무원 의제

붙임 1 중국 지역 지식재산권보호센터(56개)

순번	성/자치구/직할시	센터명칭	분야
1	베이징北京	중국(베이징北京)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차세대정보기술및첨단장비제조
2		중국(중관촌中关村)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신소재및생물의약
3	텐진天津	중국(텐진天津)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차세대정보기술과신소재산업
4		중국(빈하이신구滨海新区)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첨단장비제조및바이오의약
5	허베이河北	중국(허베이河北)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에너지절약및친환경및첨단장비제조
6	산둥山东	중국(산둥山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차세대정보기술및해양기술
7		중국(제남济南)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첨단장비제조및바이오의약
8		중국(둥영东营)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석유채굴및가공과고무타이어
9		중국(웨이팡潍坊) 지식재산권보호센터	광전, 기계장비, 화학, 생물의약
10		중국(옌타이烟台)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현대식품및화학산업
11		중국(쯔보淄博)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신소재산업
12		중국(더저우德州)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신소재와바이오의약산업
13	상하이上海	중국(푸둥浦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첨단장비제조, 바이오의약, 차세대정보기술
14		중국(상하이上海)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신소재와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을대상으로지식재산권신속협동보호업무를전개함
15	장쑤江苏	중국(창저우常州) 지식재산권보호센터	로봇및스마트석재
16		중국(쑤저우苏州)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신소재및바이오제품제조
17		중국(난징南京)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차세대정보기술및바이오제약
18		중국(난통南通)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스마트제조장비와현대텍스타일
19		중국(취저우徐州)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지능형제조
20		중국(장쑤江苏)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첨단장비산업, 신형기능및구조재료산업
21		중국(태주泰州)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첨단장비제조및의료산업
22		중국(우시无锡)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사물인터넷과스마트제조산업
23	저장浙江	중국(저장浙江)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차세대정보기술및새로운에너지

24		중국(항저우杭州)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첨단장비산업
25		중국(닝보宁波)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자동차및부품제조
26	푸젠福建	중국(취안저우泉州)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스마트제조와반도체
27		중국(닝더宁德)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신에너지산업
28		중국(푸젠福建)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계장비와전자정보산업
29	후베이湖北	중국(우한武汉) 지식재산권보호센터	광전자정보
30	湖南	중국(창사长沙)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스마트제조장비
31	장시江西	중국(감주赣州)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신형기능소재및장비제조
32		중국(난창南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중의약및전자정보
33	안후이성安徽	중국(허페이合肥)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차세대정보기술과첨단장비제조산업
34	허난河南	중국(낙양洛阳)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첨단장비제조와신소재산업
35		중국(신향新乡)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크레인설비와배터리
36	산시山西	중국(산시山西)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신에너지산업과현대장비제조산업
37	산시陕西	중국(시안西安) 지식재산권보호센터	고급장비제조
38	간쑤甘肃	중국(간쑤甘肃)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선진제조및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
39	신장新疆	중국(커라마이크라玛依)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석유채굴가공과신소재산업
40	쓰촨四川	중국(쓰촨四川)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차세대정보기술및장비제조
41		중국(청두成都) 지식재산권보호센터	바이오및신소재산업
42	윈난云南	중국(쿤밍昆明) 지식재산권보호센터	바이오제품제조와스마트제조장비산업
43	헤이룽장黑龙 江	중국(헤이룽장黑龙江)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장비제조및바이오
44	지린吉林	중국(창춘长春)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차세대정보기술과현대화농업산업
45		중국(지린吉林)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첨단장비제조와바이오의약산업
46	랴오닝辽宁	중국(랴오닝辽宁)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신소재및차세대정보기술산업
47		중국(다롄大连)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새로운에너지및첨단장비제조
48		중국(심양沈阳)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첨단장비제조
49	광둥广东	중국(광둥广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차세대정보기술및바이오
50		중국(광저우广州)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첨단장비제조와신소재산업
51		중국(불산佛山)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스마트제조장비및건자재

52		중국(산터우汕頭)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화학공업산업과기계장비제조
53		중국(심천深圳)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새로운에너지와인터넷
54		중국(주하이珠海)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하이엔드장비제조및가전전기
55	하이난海南	중국(싼야三亚)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해양및현대화농업산업
56	내몽고内蒙古	중국(내몽고内蒙古) 지식재산권보호센터	바이오및신소재산업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 지식재산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자등"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자를 말한다.
7.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9.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10.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정책을 정하는 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역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략
 3.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지역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 강화 방안
 5. 지역 내 주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행위 방지 방안
 6.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역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 계획
 10. 지식재산 관련 문화, 교육, 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 계획
 11.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된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된 내용
 12.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④ 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변경 및 제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제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인력의 배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라 한다)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른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특별지자체에 둘 수 있다.

1. 각종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 지식재산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4.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역 내 공공부문 및 기업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공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지역 내 기업체 대표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 또는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는 심의·의결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정 등)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자체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른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전담기관으로 전략본부를 특별지자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1.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제12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강화
 5. 제14조에 따른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6. 제15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7. 제16조에 따른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진흥
 8. 제17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지원
 9. 제18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10.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인식개선
 11. 제21조에 따른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 수립·시행 지원
 12.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본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본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그 밖에 전략본부의 지정·운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3장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제12조(지식재산 창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2.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기반 연구개발
3. 지역 고유 특산품, 문화자산 등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의 창출 및 권리화
4. 지역 내 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 강화

5.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직무발명의 활성화
6.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들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국내외 특허 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2.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3.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공급
4. 지역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대상의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2. 지역 내 지식재산 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세제 지원
3. 지역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 지원
4. 지역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5.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6. 「지식재산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체계가 지역 내 지식재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지식재산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
2.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식재산 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 설치 지원
3.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직원, 조교 및 교직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 직원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지원

4. 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 지원

5.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유명 관광지, 지역 고유 특산물, 문화자산, 지리적 표시 등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브랜드 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브랜드의 지식재산 권리화에 관한 조사·연구

2. 지역 브랜드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3. 지역 브랜드 상품의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지식재산 금융 지원

4. 지역 브랜드 상품의 국내외 마케팅, 홍보활동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브랜드 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에서 창출·보호·활용되는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장애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농어촌 주민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지식재산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2.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3. 지역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4. 지역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을 건립·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시설물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① 특허청장은 지식자산을 활용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 선도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지식재산 선도도시 특성화 계획

3.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선정, 지정 취소 등의 심사를 위해 특허청장 소속으로 지식재산 선도도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특허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식재산 선도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그 밖에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심의위원회의 설치,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취소)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지식재산 선도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 ② 특허청장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식재산 선도도시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재산 선도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 지원
2.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3.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5.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진흥
6.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8. 지식재산 인식개선

② 국가는 제20조에 따라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역 지식재산 진흥기금의 조성) ① 특허청장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지역 지식재산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허법」 제79조 및 제82조에 따른 특허료, 그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2. 「실용신안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그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3. 「디자인보호법」 제79조 및 제8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그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4. 「상표법」 제72조 및 제78조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5.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7. 차입금
8. 기금 운용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9.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행사 등 지식재산 활동의 촉진
2. 지역 지식재산 보유 사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3. 지역 기업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
4. 지역 지식재산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지역 기업, 공공기관의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지역 지식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

- 7.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건립 및 운영비용 지원
 - 8.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재산 법률 지원
 -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④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을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26조(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본부 또는 지역 지식재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 제10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략본부의 임직원,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지역 지식재산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지식재산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중기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2. 세부과제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지식재산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허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행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2. 세부과제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산업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자원(財源)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식재산 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성과분석) ①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시행계획이 종료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점검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행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 및 개선의견을 시행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법제7조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포상 또는 위임사업의 국비 증액 등의 형태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지역 지식재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 지식재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지식재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정·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라고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지식재산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는 것
4. 법 제1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정보의 수집·관리·구축 및 통계분석 등이 가능할 것
- ② 전략본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략본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제6조(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2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시의 지식재산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 선도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취소) 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 선도도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식재산 선도도시 추진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

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 선도도시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식재산 선도도시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에 대하여 법 제 2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4. 지식재산 선도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0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표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고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촉진 및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자등"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자를 말한다.
7.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8.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9.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 등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및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식재산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밖에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정책을 정하는 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역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략
3.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지역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 강화 방안
5. 지역 내 주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행위 방지 방안
6.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역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 계획
10. 지식재산 관련 문화, 교육, 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 계획
11.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된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된 내용
12.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기계획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인력의 설치 및 운영)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심의 또는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역 지식재산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 지식재산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4.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역 내 공공부문 및 기업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

- 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공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지역 내 기업체 대표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 또는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는 심의·의결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식재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심의·평가를 의뢰 할 경우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과 협력)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학교·관계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정 등)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체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른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전담기관으로 전략본부를 특별자치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1.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2.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지원
 4. 제18조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강화
 5.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6. 제20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7. 제21조에 따른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진흥
 8. 제22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지원
 9. 제23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10. 제24조에 따른 지식재산 인식개선
 11. 제26조에 따른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 수립·시행 지원
 12.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본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본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략본부의 지정·운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1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4장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제17조(지역 지식재산 창출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 우수한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2.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기반 연구개발
3. 지역 고유 특산품, 문화자산 등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의 창출 및 권리화
4. 지역 내 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 강화
5.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직무발명의 활성화
6.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7. 그 밖에 우수한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국내외 특허 동향을 조사를 관련 공공연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 내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 지식재산 보호강화)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2.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3.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공급
4. 지역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
5.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 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 내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대상의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2. 지역 내 지식재산 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세제 지원
 3. 지역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 지원
 4. 지역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5.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6. 「지식재산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업이전을 위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 및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 ④ 지방자치단체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보 또는 도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지식재산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
2.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식재산 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 설치 지원
3.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직원, 조교 및 교직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 직원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지원
4. 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 지원
5.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 지원
6.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 내 유명 관광지, 지역 고유 특산품, 문화자산, 지리적 표시 등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브랜드 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브랜드의 지식재산 권리화에 관한 조사·연구
 2. 지역 브랜드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3. 지역 브랜드 상품의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지식재산 금융 지원
 4. 지역 브랜드 상품의 국내외 마케팅, 홍보활동
 5. 그 밖에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브랜드 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 내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에서 창출·보호·활용되는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4. 그 밖에 지역 내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 내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식재산 인식개선)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2.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 지식재산센터, 지역 대학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3. 지역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4. 지역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제25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26조(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지식재산 선도도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지식재산 선도도시 특성화 계획
3.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 중기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 및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 제16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략본부의 임직원,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지역 지식재산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